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394

발의연월일: 2025. 5. 7.

발 의 자:서미화・오세희・홍기원

허성무 • 김영환 • 김주영

안태준 • 박지원 • 김예지

강준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야 함.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에 장애인 인권, 장애인 복지 등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은 장애인을 직접 대면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 보호 체계에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있음.

이에 취업제한명령 대상인 장애인관련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장애인 인권 보호 및 복지 사업 등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하여 장애인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제14호 신설).

법률 제 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3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장애인 인권, 장애인 복지 등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장애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장애	취업제한 등) ①
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	
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벌금형을 선	
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	
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	
(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	
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	
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	
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 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장애인 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 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 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 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 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13. (생 략) <u><신 설></u>

<u>.</u>

- 1. ~ 13. (현행과 같음)
- 14.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 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장애인 인권, 장애인 복 지 등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장애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 한다)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